

 국토교통부		<b>보도설명자료</b>	
		배포일시	2020. 10. 15(목) / 총 1매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한정희, 사무관 양승길, 주무관 최단비</li> <li>• ☎ (044) 201-3413, 3416</li> </ul>
	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장우철, 사무관 유지만, 박태진</li> <li>• ☎ (044) 201-3321, 4177</li> </ul>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10.15) >

◆ 임차인 편들다 ‘홍남기 피해자 되자’...국토부, 계약갱신 명시 추진(서울경제)  
홍남기가 당하니까 이제야? 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(조선일보)

-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,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‘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’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지난 9.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,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’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, 이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부총리의 주택 매매 사례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양승길 사무관(☎ 044-201-34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